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5.

발의자 : 한정애 · 이수진 · 이강일

부승찬 · 정성호 · 조인철

정춘생 · 김주영 · 양문석

강준현 · 박홍근 · 박지원

서영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,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,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, 다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~20%p 상향하고,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~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“이 절 및 제10절의4”를 “이 절,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”로 한다.

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”를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”로, “제4호 및 제5호”를 “제4호·제5호 및 제5호의2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연간 250만원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”을 “연간 250만원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(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0만원,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,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)을 더한 금액”으로 한다.

- 5의2.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- 가.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: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× 100분의 5
 - 나.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: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×

100분의 10

다.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

× 100분의 2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

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0조의3(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. 1. (생 략) 2.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가. (생 략) 나.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(이하 <u>이 절 및 제10절의4</u> 에서 “부양자녀”라 한다) 가 있는 사람	제100조의3(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<u>이 절,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</u> ----- --
3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	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----- -----

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· 제2호 ·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---제4호 · 제5호 및 제5호의 2-

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:

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

합계액 × 100분의 5

나.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:

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

합계액 × 100분의 10

다.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

신용카드등사용금액

	<u>연간합계액 × 100분의 20</u>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<u>연간 250만원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</u> 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.	⑩ ----- -----연간 250만원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(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0만원,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,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)을 더한 금액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